

□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서류제출 기한	2021년 4월 8일(목)~4월 17일(토) 10:00~16:00 도착분까지(반드시 지정된 기간내 서류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.)
제출방법	홈페이지 방문예약 후 견본주택 접수
제출장소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30-2 중흥 S-클래스 파크시티 견본주택 (대표번호 031-968-9570)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 37.5도 이상 고객은 방문이 불가합니다. ·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견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·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□ 특별공급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○		신청자격별 구비서류	·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	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· 용도 : 아파트 임대계약용(본인 발급용)	
	○		인감도장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가능(대리인 신청 불가)	
	○		신분증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
	○		본인 주민등록표등본	· 이름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· 이름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	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·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	
		○	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	·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	
		○	추가 개별통지 서류	· 사업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(개별통지)	
		○	비사업자확인각서	· 견본주택 비치	
	○	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	·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		
유형별	청년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· 혼인신고일 확인서,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	
		○	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	· 본인이 소득이 있을 경우	
		○	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	·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	
	신혼 부부	혼인 상태인 경우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· 혼인신고일 확인서,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		○	소득관련 서류	·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구성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
		혼인 예정인 경우	○	결혼 확인 서류	· 서약서(견본주택 비치),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
			○	예비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	· 이름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
			○	소득 관련 서류	·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구성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
	고령자	○	소득 관련 서류	·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구성원 모두 소득 관련서류 발급	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(배우자 포함)		○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·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_청약자 기준	
		○	위임장	· 견본주택 비치,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	
		○	대리인 신분증, 인장	·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	

- ※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차인도집공고일(2021.03.26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-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당첨자(예비당첨자포함)에 한하여 계약관련서류를 제출받으며, 청약 시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과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.
- 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▣ 특별공급 소득 기준(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)

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							
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8인
100% 이하	2,991,631원	4,562,535원	6,240,520원	7,094,205원	7,094,205원	7,521,048원	7,947,891원	8,374,734원
110% 이하	3,290,794원	5,018,789원	6,864,572원	7,803,626원	7,803,626원	8,273,153원	8,742,680원	9,212,207원
120% 이하	3,589,957원	5,475,042원	7,488,624원	8,513,046원	8,513,046원	9,025,258원	9,537,469원	10,049,681원

- 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→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(1인당 평균소득(426,843) * (N-8), 100% 기준) ※ N→9인 이상 가구원수
- ※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 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임.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.
- 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÷ 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.
- 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)

▣ 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(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(원본)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직인날인)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전직자 / 신규취업자	① 재직증명서 (직인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직인날인)	①, ② 해당 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(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(원본, 직인날인)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"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	①, ② 해당 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재직증명서 (직인날인)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①, ② 해당 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(사본)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(원본)	①, 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(사본)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(원본) 제출	①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	① 사업자등록증 (사본)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(부분)	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
	법인사업자	① 법인등기부등본 (사본) 및 사업자등록증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(원본)	① 등기소 ② 세무서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(원본)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(원본)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① 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비고 : 직인날인) ※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	① 해당 직장 ※ 국민연금관리공단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(건분주택 비치) ※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① 건분주택	

- 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(2021.03.26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- ※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에는 「직인 날인」이며 제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(단, 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 제외)
- 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